



13805 과천시 희망길 36

과천외고 제2025-41호

가정통신문

전 화 : 070-4881-3400

교무부 : 070-4881-3451

행정실 : 02-6677-5726

2025학년도 출결 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04호, 제433호)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7장 출석상황 관리에 따른 주요 출결 처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결 처리 안내 >

결 석 처 리	질병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3. 부득이한 이유로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등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한다.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함)
	미인정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하는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처리 기타출석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

	체 실습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table><tr><th>구 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결 혼</td><td>형제, 자매, 부, 모</td><td>1</td></tr><tr><td>입 양</td><td>학생 본인</td><td>20</td></tr><tr><td rowspan="4">사 망</td><td>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td>5</td></tr><tr><td>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td><td>3</td></tr><tr><td>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td></td></tr><tr><td>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td>3</td></tr></table>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8.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1일(단,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9.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지각·조퇴·결과처리	☐ 지각·조퇴·결과 처리																		
	1.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2.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00)과 하교시각(16:00) 사이에 하교한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3. 학교장이 정한 수업시간의 일부(수업시간의 5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결과로 처리한다.																		
	[수업의 2/3이상 참석할 시 이수(출석)처리 :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																		
	4. 보건실 이용은 질병 결과로 처리한다.																		
5. 상담실 또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출석 처리'하고, 불참한 경우 '미인정 결석 또는 결과 처리' 한다.																			

2025년 3월 25일

과천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